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적극행정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회피·기피 규정 및 합동회의 운영 근거 마련,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운영 근거 마련

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구성 개선(안 제12조, 제12조의2)

1)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시

2)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3)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운영 근거 신설

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강화(안 제19조의2, 제20조)

1)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근거 신설

2) 소극행정 예방 지원 관련 권익위 권한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5. 6. ~ 6.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감사기구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수 기관과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의2, 제13조의2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의2(적극행정 국민신청)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같은법 제2조에 따른 기타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국민제안을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신청(이하 “적극행정 국민신청”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2.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②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소관 중앙행정기관
3. 해당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관련된 기존 민원 또는 국민제안의 처리 결과
4. 신청취지

③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국민신청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 기존 민원 또는 국민제안의 처리 결과, 신청취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후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배정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신청 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때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7.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운영 실태,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운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접수·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2(소극행정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극행정을 신고한 자는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소극행정 신고 및 이의신청의 접수·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을 “인사혁신처장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으로, “수”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출된 자료의 확인을 위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이나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u>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을 포함해야 한다.	③ ----- ----- ----- ----- ----- <u>감사기구의 장</u> ----- ----- -----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⑥ 위원회는 다수 기관과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제1항부터 <u>제6항까지</u>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⑧ ----- <u>제7항까지</u> ----- ----- ----- -----.
<u><신설></u>	<u>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u>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신 설>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의2(적극행정 국민신청)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같은법 제2조에 따른 기타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국민제안을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이하 “적극행정 국민신청”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사기구
의 장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2.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②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소관 중앙행정기관

3. 해당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관련된 기존 민원 또는 국민제안의 처리 결과

4. 신청취지

③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국민신청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 기존 민원 또는 국민제안의 처리 결과, 신청취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후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배정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신청 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

· 조정 ·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때

3.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단순한 주의환기 · 진정(陳情) ·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7. 특정 개인 · 단체 ·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운영 실태,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 ·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

<신 설>

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운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접수·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2(소극행정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극행정을 신고한 자는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u>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u> ② (생략) <u><신설></u>	④ <u>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u> ⑤ <u>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소극행정 신고 및 이의신청의 접수·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u>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u>인사혁신처장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u> ----- ----- <u>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출된 자료의 확인을 위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 다만,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이나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연 락 처	(044) 201 - 8501